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발의의안.....2면
-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 검토보고서.....36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12. 7.(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제 출 의 안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 주 군 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2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2) 주요내용

- 예산규모 : △8,760백만원
 - 일반회계 : △8,200백만원
 - 특별회계 : △560백만원

※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부서류

-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기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2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2) 주요내용

- 기금예산규모 : 381백만원
- 성주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 381백만원
- ※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부서류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5조)
- 나.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4조)
- 다.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22조)
- 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안 제2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시스템 유지보수비(금사천육백삼십이만일천원정)
- 다. 기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9464(2023.08.14.)호]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37832(2023.08.09.)호]
 - 3) 입법예고 : 2023. 09. 11. ~ 10. 04.(24일간)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열관,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전담부서”란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실제적인 시설물의 관리 또는 현장의 업무를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군 이외에 관내에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등을 관리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 조직 및 인력 운용

제4조(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 및 교류

제5조(사용자 교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성주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3.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안전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전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전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전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

제15조(업무지정)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데이터 담당자”와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자가 공간정보 데이터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 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사.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아.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전산파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⑤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6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관리)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로부터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담당)을 경유하도록 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 성과파일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얻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지하시설물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르며, 반드시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를 실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

을 마련해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유관기관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을 저장매체(Disk, Tape, CD 등) 또는 온라인으로 군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도시기준점 관리부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지형·지물의 변경이 발생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23조(공간정보 제공)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군에서 구축·관리 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성주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

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5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 ①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군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정보와 자료를 공간정보 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6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제25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입증지로 한다.

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보안관리)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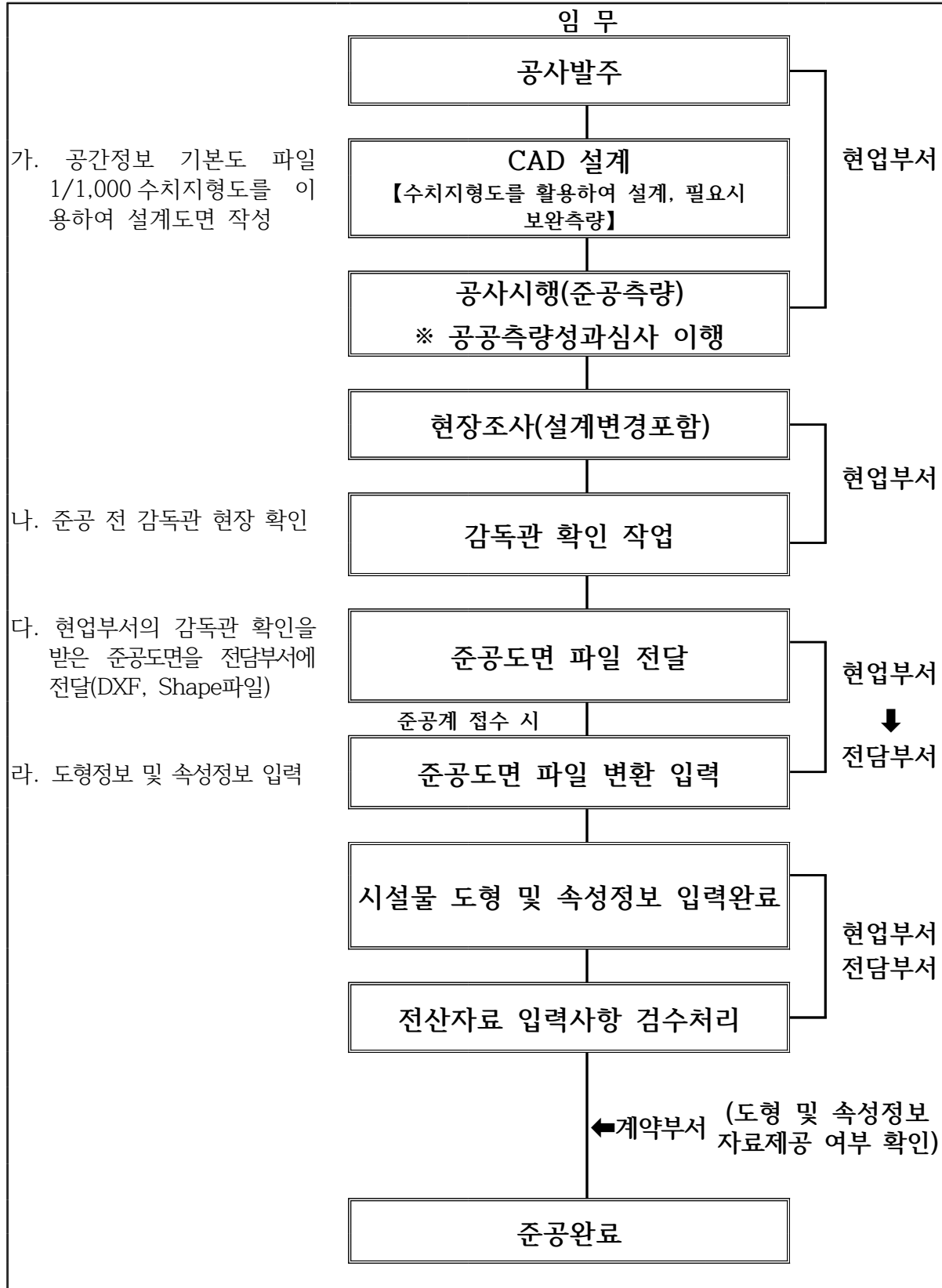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대해서는 「성주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



[별표 2]

공간정보 자료의 복제 수수료

종 류	금 액	비 고
•수치지형도(1/1,000) 벡터 데이터 (Vector Dat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 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수치지형도(1/1,000) -수치정사사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 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별표 3]

공간정보 자료의 수수료 감면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파일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성주군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50%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① 장애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② 장애발생업무명		
③ 장애처리시기		
④ 사 용 자		
⑤ 장애발생내용		
구 분	내 용	
장애발생 상 황	업 무 명	
	장애내용	
	발생경위	
조치사항		
확인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광주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료사용자에게 있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책임을 당 기관(본인)이 지켰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 · 부서(담당)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수기관 · 부서(주무관)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관련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그 밖에 목록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 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장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폐지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의 개정예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 함.

※ 기존 기금 목적사업은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해 계속 수행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폐지

나.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성주군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통합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폐지이유

「성주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88년에 제정·운영 되어 왔으나,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 및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사업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 준치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일반회계로 전환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23. 9. 26. ~ 10. 16.)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용자된 자금의 상환, 감면 및 회수(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잉여금, 상환금 및 그 외 수입 등은 모두 성주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관련 규칙의 폐지)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시행 규칙은 폐지한다.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12. 7.(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1.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2.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5조)
-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4조)
-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22조)
-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안 제2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예산조치 : 시스템 유지보수비 (금사천육백삼십이만일천원정)
-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3) 입법예고 : 2023. 09. 11. ~ 10. 04.(24일간)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군민들의 용이한 공간정보 접근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공간정보 생산관리와 공개를 「국가공간 정보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를 증진 시키고 우리군 공간 정보체계의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폐지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 폐지
-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 예산조치 : 성주군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통합
- 기 타 : 1) 입법예고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당 장학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로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폐지조례안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폐지이유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88년에 제정·운영 되어 왔으나,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 및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사업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 존치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일반회계로 전환
-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9. 26. ~ 10. 16)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 자금의 설치와 운용에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 확대와 용자금 지원 창구의 유사·중복으로 2019년 이후 본 조례에 따른 용자 신청이 전무하여 용자 사업을 중단하여도 저소득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본 조례와 사업이 가진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